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18. 3. 27 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속 애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-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개정이유

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학교도서관협력체계망을 확대함으로써,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
 - 현행: 「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」
 -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」
- 정의규정 신설
 -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(안 제2조 제4항)
 - “학교장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(안 제2조제4항)
 - “교육전문직원”이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(안 제2조제5항)
- 협력체구축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에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,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
- 최근 대형서점과 온라인 매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서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, 학교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하여 지역서점들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,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사료됨.
- 또한 조례명을 「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」로 변경한 것은 조례의 소속기관과 조례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 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.